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3-23

## 대구지방법원

### 제2민사부

### 판결

사건번호 2014나10975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6. 18. 선고 2013가소52422 판결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8.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5. 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5. 17. 18:39경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원고가 택배기사의 파업과 관련하여 'C'라는 제목으로 피고의 생각과 다른 내용의 글을 올리자 '이런 글을 쓰는 사람도 있군요. 당신이 택배 일을 해 보시지.. 몇일이나 버틸까...혹 일베충이 쓴 글이 아닐까 의심을...'이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나. 위 모욕행위 때문에 피고는 2013.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3고약8759)에서 모욕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모욕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먼저 택배기사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하여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되었고 그 표현 내용이 단정적이 아닌 유보적으로 되어 있는 점, '일베충'이라는 표현이 일간베스트 회원들 사이에서 '일간베스트에 충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 위 모욕의 피해자가 원고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댓글 작성으로 원고를 모욕한 것이라 볼 수 없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피고의 나이, 피고가 모욕을 한 경위와 표현의 정도, 그 이후의 경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를 2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4. 5. 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5.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3-23

판사 탁상진

판사 최혜인